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자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32 호
- 제 출 자 : 김일영 의원 외 14 인
- 제 출 일 : 2021. 11. 16.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성북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¹⁾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다. 구민의 권리²⁾에 관한 규정(안 제5조)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³⁾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³⁾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1. 16. ~ 2021. 11. 21.

라. 기타사항

- 2021.10.19. 성북경찰서 주관 “성북구민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 개최

5. 검토의견

2021. 4.16.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0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단위 : 억원, 건, %, %p)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감(률)
피해금액	2,431	4,440	6,720	2,353	△4,367(△65.0)
환 급 액	598	1,011	1,915	1,141	△773(△40.4)
환 급 륜	24.6	22.8	28.5	48.5	20.0
피해건수	50,013	70,218	72,488	25,859	△46,629(△64.3)

‘20년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는 각각 2,353억원 및 25,859건으로 전년대비 피해금액은 4,367억원(△65.0%) 감소되었고, 피해건수는 46,629건(△64.3%)으로 감소하였음.

- 피해금액 중 1,141억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환급률이 48.5%로 20.0%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사기조직의 활동이 제한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다만,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연령별 · 성별에 따라 특정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은 대출빙자형, 사칭형, 메신저피싱(모바일 · 인터넷뱅킹)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며 그 유형별 피해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18년		'19년		'20년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출빙자형	3,093	(69.7)	4,506	(67.1)	1,566	(66.6)	△2,940	(△0.5)
사칭 형	1,346	(30.3)	2,214	(32.9)	787	(33.4)	△1,427	(0.5)
메신저피싱	216	(4.9)	342	(5.1)	373	(15.9)	31	(10.8)
합 계	4,439	(100.0)	6,720	(100.0)	2,353	(100.0)	△2,940	(0.0)

- '20년중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5.0% 감소하였음에도,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1% 증가
 - 이에 따라 메신저피싱 피해가 전체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전년대비 10.8%p 증가

'20년 대출빙자형 피해의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 억원, %)

구분	대출빙자형					
	남성		여성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0대이하	0.2	(0.0)	0.1	(0.0)	0.3	(0.0)
20·30대	132	(8.5)	100	(6.4)	232	(15.0)
40·50대	600	(38.7)	408	(26.3)	1,008	(65.0)
60대이상	218	(14.0)	93	(6.0)	310	(20.0)
합계	950	(61.2)	601	(38.8)	1,551	(100.0)

-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연령별로는 40·50대의 비중이 65.0%로 가장 높으며,
- '20년 중 대출빙자형 피해금액은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61.2%로 여성(38.8%)보다 높으며,
- 성별·연령별 모두 감안 시, 40·50대 남성이 38.7%로 가장 높아 40~5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0년 사칭(기관 or 지인)형 피해의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 억원, %)

구분	대출빙자형					
	남성		여성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0대이하	0.0	(0.0)	0.0	(0.0)	0.1	(0.0)
20·30대	60	(7.7)	18	(2.3)	78	(10.0)
40·50대	80	(10.2)	244	(31.4)	324	(41.7)
60대이상	136	(17.5)	239	(30.8)	376	(48.3)
합계	276	(35.5)	502	(64.5)	777	(100.0)

- '20년중 사칭형 피해금액은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64.5%로 남성 (35.5%)보다 높고,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48.3%로 가장 높으며,
- 성별·연령별 모두 감안 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각각 28.4% 및 27.1%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채널별(모바일, 인터넷뱅킹) 피해금 이체비중* 현황

(단위 : %, %p)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A)	'20년(B)	증감(B-A)
모바일·인터넷뱅킹	42.1	54.0	66.3	71.7	75.2	3.5
창구·ATM	35.5	34.4	23.5	15.1	13.5	△1.6
텔레뱅킹	5.1	5.5	5.7	8.4	4.8	△3.6
기타	17.3	6.2	4.5	4.8	6.5	1.7
전체	100	100	100	100	100	-

- '20년 중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한 피해금 이체 채널별 비중은 모바일·인터넷뱅킹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창구·ATM 13.5%, 텔레뱅킹 4.8% 등임

-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 비중은 ‘16년 42.1%에서’ 20년 7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 창구·ATM을 통한 이체는 ‘16년 35.5%에서’ 20년 13.5%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등 전국에서 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는 조례로써, 성북구의 경우 2021년 10월 19일 성북경찰서 주관으로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성북구민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을 갖으며 구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 등 가정파탄을 초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확대 및 사업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구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